

# 뇌과학이미징연구단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뇌과학이미징연구단(이하 “연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단은 최첨단 뇌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시스템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안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경 물리학 및 화학, 뇌신경혈류 카풀링, 휴먼 인지기능, 인지 신경회로, 계산 신경과학의 5개 분야 연구
2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3. 학·연·산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
4. 시스템 뇌과학 분야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
5. 연구단 주관 국제 저명학자 초청 단기학교 개최
6. 시스템 뇌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
7. 정기간행물 및 연구결과물 발간
8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제5조(기구) 연구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연구단장
2. 위원회
  - 가. 자문위원회
  - 나. 운영위원회
  - 다. 국제협력위원회
  - 라. 외부 평가위원회
3. 연구그룹
  - 가. 신경 물리학 및 신경 화학 그룹
  - 나. 뇌신경혈류 기전 연구 그룹
  - 다. 휴먼 인지기능 연구 그룹
  - 라. 인지 신경회로 연구 그룹
  - 마. 계산 신경과학 그룹
4. 행정실

제6조(연구단장) ①연구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Institute for Basic Science(이하 “IBS”라 한다)에서 임명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단, IBS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②단장의 임기는 IBS규정을 따른다. 단, IBS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재임명된 단장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④연구단에서는 필요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단장이 추천하고, 그 임용 및 임용절차·임기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⑤단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그 직무대행은 부단장이 한다.

### 제 3 장 자문위원회

**제7조(구성)** ①연구단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자문위원회는 단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자문위원은 국내·외 저명 학·연·산 전문가 가운데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능)**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

1. 연구단의 제반사항에 관한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
2. 연구단의 연구방향 제언
3.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9조(회의)**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단장의 요청에 의해 개회한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10조(구성)** ①연구단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, 그룹리더 및 단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<삭 제>

**제11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연구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연구단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연구단 연구원 임용, 재임용,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
6.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보고서에 근거한 연구원 전·출입에 관한 사항
7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8. 예·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9. 산하 기구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10. 기기의 선정,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1. 연구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12조(회의)**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5 장 국제협력위원회

**제13조(구성)** ①연구단은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 및 교육의 국제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.

②국제협력위원회는 단장, 부단장, 그룹리더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4조(회의)** ①국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국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6 장 외부평가위원회

**제15조(구성)** ①연구단은 연구방향의 적정성 평가와 연구성과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단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외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연구자 가운데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6조(회의)** ①외부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외부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.

## 제 7 장 교원·연구원

**제17조(연구단 전임교원)** ①연구단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단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18조(겸직교수)** ①연구단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겸직교수란 겸직으로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.

③연구단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19조(비전임교원)** ①연구단에는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, 객원교수, 연구교수, 명예교수, 대우전임교수, 초빙교원,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단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20조(연구원)** ①연구단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
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
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2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
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 단, 장비관리인력의 경우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도 필요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상임연구원은 단장이 제정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③객원연구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
- ④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연구단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⑥연구단에는 필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## 제 8장 행 정 실

**제21조(행정실)** ①연구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- ②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1. 연구단의 일반 행정
2. 연구단의 연구 행정
3.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 학사업무 지원
4. 연구단의 교내·외 홍보업무
5. 연구단의 간행물 발간,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
6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**제21조의2(행정직원)** ①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.

- ②행정직원은 단장을 보좌하여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 제 9 장 재 정

**제22조(재정)** ①연구단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②연구단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23조(회계연도)** 연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 10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**제24조(사업계획)** IBS 사업계획을 따른다.

**제25조(사업실적)** 단장은 IBS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며,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감사)** 연구단은 운영에 관하여 IBS 단계평가에 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11 장 보 칙

**제2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